

	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	제 정 일	2014.08.11
		개 정 일	2015.06.01
	경유(Diesel)	개정번호	1
		면 수	1 / 12

1. 화학제품과 회사정보

가. 제품명 : 경유(Diesel)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 : 연료, 중간체, 도료, 윤활유, 방출제, 결합제, 기능성 유체
 사용상의 제한 : 권고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마시오.

다. 제조자/공급자 정보 :

1) 제조자 정보 :

제 조 회 사 명	한화토탈주식회사		
주 소	(356-711)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		
전 화	041-660-6443	전 송	041-660-6417

2) 공급자 정보 :

공 급 회 사 명	한화토탈주식회사		
주 소	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 24층 에너지영업 2팀		
전 화	02-3415-9400	전 송	02-3415-9390

3) 작성자 정보 :

부 서	기술기획팀		
전 화	041-660-6831,6837	전 송	041-660-6819

2. 위험·유해성정보

가. 유해·위험성 분류 :

1) 물리적 위험성

- 분류되지 않음

2) 건강 유해성

- 급성 독성 (흡입) : 구분4
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

- 발암성 : 구분2

- 특정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 : 구분2

- 흡인 유해성 : 구분1

3) 환경유해성
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3

나. 예방 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1) 그림문자 :



2) 신호어 : 위험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	2014.08.11
개 정 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 수	2 / 12

경유(Diesel)

3) 유해·위험 문구 :

-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H332 흡입하면 유해함
-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
-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함

4) 예방조치 문구 :

■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.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P260 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P281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■ 대응

- P301+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21 의학적 처치를 하시오.
-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P362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.

■ 저장
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.

■ 폐기

- P501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

NFPA 지수 : 보건= 1, 화재= 1, 반응성= 0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 2014.08.11

개 정 일 2015.06.01

경유(Diesel)

개정번호 1

면 수 3 / 12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번호 or 식별번호	함유량(%)
경유	디젤 오일, 연료유 No. 2	68476-30-2	100%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-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
-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.
-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십시오.
-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.
-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,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.
-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 :

-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십시오.
- 토하게 하지 마시오.
- 과량의 먼지 또는 흡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,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.
-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십시오.
-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

라. 먹었을 때 :

-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토하게 하지 마시오.

마. 응급 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

- 노출 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십시오.
-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	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	제 정 일	2014.08.11
		개 정 일	2015.06.01
	경유(Diesel)	개정번호	1
		면 수	4 / 12

5. 폭발 화재시 조치요령
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 :

1) 적절한 소화제

-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 시 알코올 포말,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
- 질식 소화 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

2) 부적절한 소화제 : 직사주수 금지

3) 대형 화재 시 : 자료없음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1) 열분해 생성물
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(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, 황산화물, 황화수소 등)가 발생할 수 있음

2) 화재 및 폭발위험

-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고인화성: 열, 스파크,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
- 누출물은 화재/폭발 위험이 있음
- 실내, 실외,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-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.
-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
-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
-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음
-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.
- 탱크 화재 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십시오.
-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.
-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.
-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.
- 탱크 화재 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.

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

- 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-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,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	2014.08.11
개 정 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 수	5 / 12

경유(Diesel)

- 유출물을 만지거나 유출된 곳을 걸어다니지 마시오.
-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.
- 물질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.
- 증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
- 수로, 하수구, 지하실,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 :

1) 소량 누출 :

- 불활성 물질(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)로 덮지른 것을 흡수하고,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.
-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흠여지는 것을 막으시오.
-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.
-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십시오.

2) 다량 누출 : 액체 누출물과 멀게 하여 도랑을 만드시오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분진·흙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/경고표시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취급/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.
-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.
-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.
- 물질 취급 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.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- 열에 유의하십시오.

저지대, 닫힌 공간 및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전 공기농도 측정 및 환기 필요함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	2014.08.11
개 정 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 수	6 / 12

경유(Diesel)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 :

-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-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.
-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:

- 1) 국내 규정(산업안전보건법) : 자료없음
- 2) ACGIH 규정 : TLV-TWA = 100 mg/m³(Skin)
- 3) 생물학적 노출기준 : 자료없음
- 4) OSHA 규정 : 자료없음
- 5) NIOSH 규정 : 자료없음
- 6) EU 규정 : 자료없음
- 7) 기타 규정
 - 벨기에 : TWA = 100 mg/m³(Skin)
 - 캐나다 : TWA = 100 mg/m³(Skin)
 - 콜롬비아 : TWA = 100 mg/m³
 - 도미니카공화국 : TWA = 100 mg/m³
 - 이스라엘 : TWA = 100 mg/m³
 - 니카라과 : TWA = 100 mg/m³
 - 포르투갈 : TWA = 100 mg/m³[VLE-MP](skin)
 - 베네수엘라 : TWA = 100 mg/m³[VTRE-L-8/40](skin)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공정격리,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,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.
- 사용 운전 시 먼지, 흙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,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사용하시오.
-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.

다. 개인 보호구

1) 호흡기보호

- 해당 물질의 노출 농도가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, 노출되는 액체 물리·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.
 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8mg/m³ 보다 낮을 경우, 보호도가 1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타입의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방독마스크


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
제 정 일	2014.08.11
개 정 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 수	7 / 12

경유(Diesel)
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20mg/m³ 보다 낮을 경우, 보호도가 25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(loose-fitting) 후드/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헬멧타입 방독마스크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40mg/m³ 보다 낮을 경우, 보호도가 5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/반면형 전동식 방독마스크, 전면형/후드 타입 송기마스크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800mg/m³ 보다 낮을 경우, 보호도가 1000 이상이고 노출되는 액체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동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 또는 전면형/후드타입 송기마스크
- 해당물질의 노출농도가 8,000mg/m³ 보다 낮을 경우, 보호도가 10,000 이상인 압력요구식 전면형/헬멧/후드 타입 송기마스크

2) 눈 보호

-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십시오.
-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(샤워식)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십시오.

3) 손 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(ex, Viton, Nitrile rubber 등)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십시오.

4) 신체보호

-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복과 보호장화를 착용하십시오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(물리적상태, 색 등) : 약간의 점성을 가진 갈색 액체
- 나. 냄새 : 디젤 냄새
- 다. 냄새역치 : 자료없음
- 라. pH : 자료없음
- 마. 녹는점/어는점 : -40~6℃(at 101.3kPa)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200~360 °C
- 사. 인화점 : 96 °C
- 아. 증발속도 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기체) : 해당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/상한 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 : 4hPa (at 40℃)
- 타. 용해도 : 29~142.1mg/L(at 25℃)
- 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- 하. 비중 : 0.829(at 15℃)
- 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 : log Kow = 3.9~6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 2014.08.11

개 정 일 2015.06.01

경유(Diesel)

개정번호 1

면 수 8 / 12

너. 자연발화온도 : $\geq 225^{\circ}\text{C}$ (101.325kPa)

더. 분해온도 : 자료없음

러. 점도 : 3.6cSt (at 40°C)

머. 분자량 : 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

- 상온, 상압 하에서 안정함
-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
- 증기는 자극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
-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

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

다. 피해야 할 조건 : 열, 스파크, 화염 등의 점화원

라. 피해야 할 물질 : 가연성물질, 환원성물질

마.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가열 시 분해되어 질소산화물, 일산화탄소, 황산화물, 황화수소 등을 생성할 수 있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1)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흡인 유해성을 야기함
- 2) 입을 통한 섭취 : 자료없음
- 3) 피부접촉 : 건조, 갈라짐 등을 야기함
- 4) 눈 접촉 : 자료없음

나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영향

1) 급성 독성 :

- 경구 : 분류되지 않음
랫드(암/수) $\text{LD}_{50}=9\text{mL/kg bw}$ (=약 $7,600\text{mg/kg bw}$) (OECD TG 420)
- 경피 : 분류되지 않음
토끼(암/수) $\text{LD}_{50}>5\text{mL/kg bw}$ (= $4,300\text{mg/kg bw}$) (OECD TG 434)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	2014.08.11
개 정 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 수	9 / 12

경유(Diesel)

- 흡입 : 구분4
 - 랫드(암/수) LC₅₀=4.1mg/L, 4hr (OECD TG 403, GLP)
- 2)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구분2
 -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자극성시험 결과, 자극성이 관찰됨(홍반지수=3.9, 부종지수=2.96)(OECD TG 404)
- 3)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분류되지 않음
 - 토끼를 대상으로 눈자극성시험 결과,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(OECD TG 405)
- 4)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- 5) 피부 과민성 물질 : 분류되지 않음
 - 기니피그(수)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시험결과, 피부과민성이 관찰되지 않음(OECD TG 406)
- 6) 발암성 물질 : 구분2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: 분류되지 않음
 - 고용노동부고시 : 분류되지 않음
 - OSHA : 분류되지 않음
 - NTP : 분류되지 않음
 - IARC : 분류되지 않음
 - ACGIH : A3
 - EU : 구분2
- 7)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: 분류되지 않음
 - 시험관 내 미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, 양성의 결과를 나타냄(OECD TG 471)
 - 마우스(암/수)를 이용한 생체 내 소핵시험 결과, 음성의 결과를 나타냄(GLP)
- 8) 생식독성 물질 : 분류되지 않음
 -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생식발달독성시험결과,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(NOEL≥ 494 mg/kg bw/day)(OECD TG 421)
- 9)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1회노출) : 분류되지 않음
 - 랫드(암/수)를 대상으로 한 급성흡입독성시험결과, 사망 및 독성학 또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음(OECD TG 403, GLP)
- 10)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반복노출) : 구분2
 - 랫드를 대상으로 90일 아만성경피독성시험결과, 적혈구, 헤모글로빈,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감소하는 혈액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었음(NOEL=30mg/kg bw/day)(OECD TG 411)
- 11) 흡인유해성 : 구분1
 - 점도가 3.6 cst (at 40℃)인 탄화수소류임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 정 일 2014.08.11

개 정 일 2015.06.01

경유(Diesel)

개정번호 1

면 수 10 / 12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·육생 생태독성 :

- 급성 수생 독성 : 분류되지 않음
- 만성 수생 독성 : 구분 3

- 1) 어류 : 96hr-LC₅₀(*Fundulus similis*) = 33 mg/L
- 2) 갑각류 : 자료없음
- 3) 조류 :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

- 1) 잔류성 : Log Kow가 4이상이므로 잔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(Log Kow = 3.9~6)
- 2) 분해성 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 :

- 1) 생분해성 : 생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높음 (28 일 후에 57.5% 생분해 됨)
- 2) 농축성 :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영향 :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

- 중화·산화·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·침전·여과·탈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.
- 증발·농축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.
- 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의 방법으로 정제 처리하시오.
-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매립하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 (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 : 1202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GAS OIL or DIESEL FUEL or HEATING OIL, LIGHT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3

라. 용기등급(해당하는 경우) : III

마. 해양오염물질(해당/비해당) : 해당됨

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제정일	2014.08.11
개정일	2015.06.01
개정번호	1
면수	11 / 12

경유(Diesel)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

- 1) 화재시 비상조치 : F-E
- 2) 유출시 비상조치 : S-E

15. 법적 규제현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규제되지 않음
- 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기존화학물질(KE-17285)
-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4류 제3석유류(비수용성액체), 2000L
-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
-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 - 1)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규제되지 않음
 - 2) EU 분류정보
 - Regulation (EU) No 487/2013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 : Carc. 2
 - Regulation (EU) No 487/2013 분류정보(위험문구) : H351
 - Regulation (EU) No 487/2013 분류정보(예방문구) : P201, P202, P281, P308+P313, P405, P501
 - EU 규제정보(EU SVHC list) : 규제되지 않음
 - EU 규제정보(EU Authorisation List) : 규제되지 않음
 - EU 규제정보(EU Restriction list) : 규제되지 않음
 - 3) 미국 관리정보
 - OSHA 규정(29 CFR1910.119) : 규제되지 않음
 - CERCLA103 규정(40 CFR302.4) : 규제되지 않음
 - EPCRA 302 규정(40 CFR355.30) : 규제되지 않음
 - EPCRA 304 규정(40 CFR355.40) : 규제되지 않음
 - EPCRA 311/312규정(40 CFR370.21) : 규제되지 않음
 - EPCRA 313규정(40 CFR372.65) : 규제되지 않음
 - 4) 로테르담 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 - 5) 스톡홀름 협약물질 : 규제되지 않음
 - 6)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규제되지 않음
 - 7) 기타 규제
 - 미국관리정보 : Section 8(b) Inventory (TSCA): 존재함
 - 유럽관리정보 :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(EINECS): 존재함(270-671-4)
 - 일본관리정보 :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(ENCS): 존재함((9)-1700)
 - 중국관리정보 :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(IECSC): 존재함[14215]
 - 캐나다관리정보: Domestic Substances List (DSL): 존재함
 - 호주관리정보 :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(AICS): 존재함
 - 뉴질랜드관리정보 : Inventory of Chemicals (NZIoC): 군 기준에 의해 포함되는 제품 내 구성성분으로서는 사용될 수 있으나, 화학물질 그 자체로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음

	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	제 정 일	2014.08.11
		개 정 일	2015.06.01
	경유(Diesel)	개정번호	1
		면 수	12 / 12

- 필리핀관리정보: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(PICCS): 존재함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- REACH information on registered substances;
<http://apps.echa.europa.eu/registered/registered-sub.aspx>
-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(IUCLID); <http://esis.jrc.ec.europa.eu/>
-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(NITE);
<http://www.safe.nite.go.jp/english/db.html>
- TOMES-LOLI@; <http://www.rightanswerknowledge.com/loginRA.asp>
- U.S. National library of Medicine(NLM) Hazardous Substances Data Bank(HSDB);
<http://toxnet.nlm.nih.gov/cgi-bin/sis/htmlgen?HSDB>
-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;
<http://monographs.iarc.fr>
- EPISUITE v4.1; <http://www.epa.gov/opt/exposure/pubs/episuitedl.htm>
- Regulation (EU) No 487/2013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; <http://www.kosha.net>
- 화학물질정보시스템(NCIS); <http://ncis.nier.go.kr/ncis/>
- 소방방재청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; <http://www.nema.go.kr/hazmat/main/main.jsp>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[1]
-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18th

나. 최초 작성일자 : 2014-08-11

다. 최초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 1회, 2015-06-01

라. 기타 참고사항

-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37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
- 본 제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산업위생습관에 따라 취급, 저장 및 사용되어야 하며, 해당되는 모든 법적 규제에 따라야 함
- 이 MSDS에 제공된 정보는 안전 요건의 관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근거함
- 그러므로 특정 성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